

농림축산식품부

다솜 2로 94, 정부세종청사  
세종시, 대한민국

날짜 : 2023.10.31.

Dr. Parthi Muthukumarasamy  
Executive Director  
International Programs Directorate  
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(CFIA)

**주제 : 캐나다 동등성 인정**

Dr. Muthukumarasamy 에게

대한민국(이하 “한국”) 농림축산식품부(이하 “농식품부”)는 캐나다 식품  
검사청법, 캐나다 식품안전법 그리고 캐나다 식품안전규정 제13장에  
정한 유기 생산, 표시, 관리를 위한 캐나다 유기 제도를 검토하였습니다.

이 검토에 근거하여 농식품부는 캐나다 식품안전규정 제13장에 적합  
하게 생산되고 취급된 유기가공식품은 한국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  
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“한국 친환경농어업법”) 요  
건을 준수하여 생산되고 취급된 것과 동등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.

따라서 동 서한의 부속서 1에 정한 조건에 따라, 농식품부는 캐나다 식품안전규정 제13장에 따라 적합하게 생산되고 취급된 유기가공식품은 한국 친환경농어업법을 준수하여 생산되고 취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 이 제품들은 부속서 1에 정한 조건에 따라, 캐나다 유기 로고뿐만 아니라 한국 유기 로고 표시를 포함하여 한국 내에서 유기로 판매, 표시 및 표현될 수 있습니다. 동 동등성 인정은 2023년 0월 00일부터 유효할 것입니다.

농식품부 2023년 10월 31일 서한을 통해 한국 유기 인증 제도에 대한 캐나다 식품검사청의 동등성 인정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 농식품부의 위임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이하 “농관원”)은 동 서한 부속서 1에서 정한 결정 조건 및 부속서 2에서 정한 실무작업반에 관한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캐나다 식품검사청과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.

감사합니다.

윤원섭 국장

농식품혁신정책국

농림축산식품부

## 부속서 1

### 동등성 인정 및 수입 요건

농식품부와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농식품부의 동등성 결정은 아래의 요건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한다:

#### 1. 캐나다 유기가공식품은:

- (i) 한국의 식품공전에서 정의한 “가공식품”으로, 유기원료 함량이 95% 이상이고, 최종 생산과 취급은 캐나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;
- (ii) 캐나다 식품안전규정 제13장에 따른 캐나다 식품검사청이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;
- (iii) 파라핀을 사용하지 않은 양봉제품 또는 파라핀을 원료로 사용한 양봉제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;
- (iv) 생장조절제를 사용하여 생산된 농산물에서 유래한 원료를 함유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한다;
- (v) 금지된 물질과 방법(CAN/CGSB32.310에 따라 금지된 농약, 방사선 조사 그리고 유전자변형생물체)에 대한 시험을 포함하여 잔류 물질 검사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, 한국 친환경농어업법 제23조의2 및 제31조에 따라 후속 규제조치를 따른다.

- 2. 위의 1항에 따라 한국으로 수입되는 캐나다산 제품(이하 “캐나다 유기가공식품”)은 한국의 유기 표기 요구사항에 따라 표시해야만 하고, 한국 유기 로고 또는 캐나다 유기 로고 또는 둘 다 표시할 수 있다.

3. 한국으로 수입되는 캐나다 유기농식품은 캐나다 식품검사청이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동 부속서 조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유효한 유기 인증서 및 NAQS 수입증명서를 첨부시킨다.
4.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다음의 사안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농관원에 고지한다:
  - (i) 캐나다 식품검사청이 지정한 인증기관의 인증지위에 대한 변경 사항; 그리고
  - (ii) 동 부속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캐나다 내 규정 및 지침의 개정(안) 또는 최종 개정사항.
5. 농관원의 사전통지에 따라,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캐나다 규제당국 및 인증기관이 캐나다 유기 인증제도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농관원 공무원이 캐나다 내에서 정기적인 현장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.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농관원이 규제당국 사무소, 인증기관의 사무소, 캐나다 내에서 인증기관이 인증한 생산시설 및 농장을 방문하는 것을 포함하여, 현장평가를 수행하는 데 있어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협력하고 지원한다.
6.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매년 농관원에 다음 서류를 제공한다:
  - (i) 동 부속서에 따라 한국에 수출하는 캐나다 유기농식품의 유형과 수량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보고서;
  - (ii) 캐나다 식품검사청이 부적합 사항이 시정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행한 관리 감독 또는 심사, 그리고 조치과정에서 파악한 부적합 유형이 포함된 보고서; 그리고
  - (iii) 캐나다 유기 규정에 따라 캐나다 식품검사청이 지정한 인증기관의 목록

## 부속서 2

### 실무작업반

1. 농식품부와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캐나다 식품검사청 대표와 농관원 대표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한다.
2. 실무작업반의 임무는 한국과 캐나다 간 유기농산품 관련 사안에 있어 규정과 표준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.
3. 실무작업반은 동 서한에 서명한 이후 일년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협정에 따른 운영실태에 대한 검토 및 협정 범위에 대해 논의, 확인된 기술적 사안에 대한 진척도 평가, 유기농산품과 관련된 우수 실천사항 및 기타 사안을 논의한다. 실무작업반은 양국의 별도 결정이 없는 한 매년 회의를 개최한다.